

1. 개정이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5.4.22. 시행)를 계기로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체계와 보조항로 운영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완화(안 제15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전관리책임자 재교육 주기를 ‘1년마다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고, 신규교육 시 이전 교육 실적 인정

나. 운항관리자 직무범위 확대(안 제15조의12제1항제14호 및 제15호 신설)

여객선 항로 및 접안시설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노력, 교육·편의 증진 서비스 제공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공공기관) 소속 운항관리자 직무영역을 확대

다. 부담금 납부 범위 및 절차 등 삭제(안 제15조의16 삭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25.4.22.)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라.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규정(안 제15조의17 신설)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 규정

마. 오일블렌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26조의11제2항제1호단서 신설)

허가신청기한 한시(2027년 6월 30일까지) 단축(20일 전→14일 전)

바. 공공기관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기준 완화(안 별표2 및 별표2의2 개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를

운항하려는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 및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9제1항제1호 중 “교육”을 “교육(다만, 선임된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서 같음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다만, 휴직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복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5조의12제1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여객선 항로 및 접안시설의 안전 위해요소 발굴 및 관계기관 협력 요청 등 개선 노력
15. 이용객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제15조의16을 삭제한다.

제15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7(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시행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개선
2.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훈련
3. 여객선 정비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확인 및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감독
4. 선원의 자격과 승하선 공인 및 선박 증서의 관리·감독
5.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필요자원 및 육상지원의 적절한 제공 여부 확인 및 보장

제26조의11제2항제1호 중 “20일”을 “20일(다만, 2027년 6월 30일까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4일로 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 중 “2017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등이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여객선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등이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위 표의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u>교육</u>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u>교육</u> ② · ③ (생략)	제15조의9(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① ----- ----- ----- ----- ----- ----- ----- ----- ----- ----- 1. ----- ----- <u>교육(다만, 선임된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서 같음한다)</u>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다만, 휴직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복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략)

<신설>

<신설>

② ~ ④ (생략)

제15조의16(운항관리자 비용부담

금)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를 둬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운임의 1천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부담금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내항여객운송사업

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여객선 항로 및 접안시설의 안전 위해요소 발굴 및 관계기관 협력 요청 등 개선 노력

15. 이용객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5항에서 “채
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
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채
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
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
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채
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
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
된 경우

4. 채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라 납부채임을 면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신 설>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
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
가) ① (생 략)
② 법 제49조제4항에서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5조의17(안전관리책임자의 직
무) 시행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개선
2.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
육·훈련
3. 여객선 정비계획에 따른 이
행상태 확인 및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감독
4. 선원의 자격과 승하선 공인
및 선박 증서의 관리·감독
5.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필
요자원 및 육상지원의 적절한
제공 여부 확인 및 보장

제26조의11(선박의 매매와 용대선
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
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인 정허가의 경우: <u>20일</u>	1. ----- ----- ----- <u>20일(다만, 2027년 6월 30일까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4일로 한다)</u>
2. (생략)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5조의2에 따른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u>2017년 1월 1일</u> 3. 삭제 4. 제16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u>2017년 1월 1일</u> 5. 제19조 및 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2. (현행과 같음) 제30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2. ----- ----- -- <u>2025년 7월 1일</u> 4. ----- ----- <u>2025년 7월 1일</u> 5. ----- -----

<u>2017년 1월 1일</u>	<u>2025년 7월 1일</u>
6. 제20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 <u>2017년 1월 1일</u>	6. ----- -- <u>2025년 7월 1일</u>
7. 삭 제	
8. 제25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u>2017년 1월 1일</u>	8. ----- ----- <u>2025년 7월 1일</u>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 (제5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여객선 보유량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 다만, 수면비행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3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합계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총톤수 500톤(속도가 30노트 이상의 선박인 경우에는 국제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1척 이상일 것
순항 여객운송사업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일 것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일 것

비고

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지역적으로 고립된 항로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등이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위 표의 여객선 보유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여객선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자본금 기준(제5조제6항 관련)

사업의 종류	자본금
내항 정기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미만인 경우: 2억원 이상 -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 4억원 이상 - 여객선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 10억원 이상
외항 정기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10억원 이상
순항 여객운송사업	50억원 이상
복합 해상여객운송 사업	50억원 이상

비고

1. 여객선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등이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위 표의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